

#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05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통해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을 조성하고자 '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'를 지정·고시〔2020.8.28./2022.10.26. (개정)〕 하였음
- 나. 이에,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,
- 다. 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」 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출연기관 : 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」
- 나. 사무명 :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
- 다. 출연근거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, 제58조, 제58조의2
  -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의2

제18조의2(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) 시장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한 '기술-창업-성장'이 선순환하는 소규모,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'홍릉 강소특구 육성 사업비' 지원 필요

마. 주요사업 내용

- 특구 내 기술 핵심기관(연구소·대학)이 개발 보유한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
-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단계별 임상시험 및 인허가, 제품개발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바. 출연대상 기관 개요

- 기관명 : 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」 ※ 2005. 9월 법인설립
- 설립목적 :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
  - \*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, 연구소기업·창업 성장지원, 특구 기반시설 구축 등
- 설립근거 :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
- 소재지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
- 조직 : 10본부(10실, 17팀), 감사 1부 1팀

사. 소요예산(안)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900,000천원
- 산출근거 : 강소특구별 육성사업 국비(2,000백만원)의 40%이상 매칭
  - ※ 과기정통부 지방비 매칭 비율 통보('21.8.26.)

(단위 : 천원)

구분	계	2024	2025	2026
출연금	1,800,000	900,000	900,000	미정

※ 사업기간 2021~2025년, 총사업비 212억 원(국비 156, 지방비 56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

**제12조(특구육성사업의 추진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(이하 “특구육성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하고,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·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

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, 특구 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,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58조2(출연 및 보조금)**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##### ○ 지방재정법

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8조2(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)** 시장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실 첨단산업과 박세준 ( ☎ 2133-8749 )